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293200 조사 중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지방검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수형자 및 미결 수용자를 조사할 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가족이고,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진정인 1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청 소속 수사관으로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고소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피진정인 1은 2018. 10. 16.부터 2018. 11. 28.까지 피해자와 고소인에 대한 대질조사를 총 7차례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나. 편파·강압 수사

1) 피진정인 2는 2018. 10. 16.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간단하게 답하라고 말하고, 고소인의 답변 위주로만 조사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2018. 10. 18.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간단하게 답하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2는 2018. 11. 13.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간단하게 답하라고 말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2018. 11. 14.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충 시인하고 편하게 가자. 자꾸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시간을 끌면 조사관이 사건을 파헤쳐서 차곡차곡 단단하게 다져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데 왜 자꾸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사건 내용만

길게 이야기 하나.”고 다그쳤다.

5) 피진정인 2는 2018. 11. 20.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피의자는 감옥에 오랫동안 살게 해 줄 테니 진술을 잘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으세요.’라는 질문란에 자필로 답변을 기재하려고 하자 “그냥 나중에 시간 줄 테니 항목에 적으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이후 결국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부분에 ‘아니오.’라고 적게 만들었다.

6) 피진정인 2는 2018. 11. 28.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골로 보내 줄테니 조사를 잘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다. 인격권 침해

1) 피진정인 2는 2018. 11. 13.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참 대단하다 돈도 없이 건물을 인수하고. 나도 돈 없이 건물 인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2018. 11. 28.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면서, “전처와 이혼했는데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왜 애들이랑 ○○빌딩 9층에 살았느냐.,” “전처는 한부모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생활하시겠네.”라고 말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1996년, 2003년도의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범행은 아니나,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 다만 고소인이 피해자를 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하거나, 피진정인 1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검사실 도착 직후, 조사 시작 전에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사관이나 교도관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물을 받는 행동을 하였다. 다만 조사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자리를 이석하였고, 자리를 이석하는 빈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는 1회 조사 시마다 2회 이상 커피를 타기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였었다.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및 조사 시작 전에 수사서류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의 상해 전력, 고소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8. 11. 14. 및 2018. 11. 20. 진행된 조사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피해자의 악감정이 앞선 조사 때와 비교하여 상당히 진정된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포승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자가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는 진술을 여러 번 하면서, 다시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로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을 공격할 시 이를 즉각 제지하기 어려웠던 당시 사무실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11. 28. 진행된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착용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편파·강압 수사)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수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전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부가하여 장황하게 진술하면서 질의사항의 본질을 수시로 흐렸다. 이에 피진정인 2가 주의를 여러 번 주었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장황하게 진술하여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지,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조서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질의 사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제대로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자발적으로 ‘아니오’라고 기재하였으며, 피진정인 2가 ‘아니오’라고 기재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찾아보고 서류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인격권 침해)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통해 건물을 고소인 명의로 매입하고 고소인으로 하여 해당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하면서, 자신은 전처와 건물 9층에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돈을 전처의 생활비용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진정인 2는 이러한 편취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 대단하다, 돈도 없이 건물을 인수하고”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나도 돈 없

이 건물 인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전처와 이혼하여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에, 피진정인 2는 이에 대응하여 “전처랑 이혼했는데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왜 애들이랑 ○○빌딩 9층에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였고, 진정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진정인이 한 부모 가정이니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겠다.’라고 질문한 것일 뿐,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정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다. 참고인

1) ○○○ 등 13명 (○○구치소 소속 교도관)

참고인들은 피해자를 피진정인 1의 검사실로 호송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포승 및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1. 14. 및 2018. 11. 20.에는 피진정인 1의 요청으로 수갑만 착용한 채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조사 중 참고인들 및 피진정인들의 사전허가 없이 자리를 이석하여 커피를 타거나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여 여러 번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참고인들 간 주의를 요한다고 인수인계 하였던 기억이 있다.

2) ○○○(○○경찰서 소속 경찰관)

참고인은 2018. 6. 26.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고소인에 대한 대질 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자필편지,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확인서, 전화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보고서(피진정인 1),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확인서, 출정일지, 검사실보호장비사용부,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질조사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가 착용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시	2018. 10. 16.	2018. 10. 17.	2018. 10. 18.	2018. 11. 13.	2018. 11. 14.	2018. 11. 20.	2018. 11. 28.
보호장비	수갑, 포승	수갑, 포승	수갑, 포승	수갑, 포승	수갑	수갑	수갑, 포승

나.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된 조사 시간, 조서 열람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자는 아래 일시에 작성된 총 7건의 수사과정 확인서의 '이의제기'란에 자필로 '없음' 또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일시	2018. 10. 16.	2018. 10. 17.	2018. 10. 18.	2018. 11. 13.	2018. 11. 14.	2018. 11. 20.	2018. 11. 28.
조사 시간	10:00~11:30	14:00~17:05	10:05~17:58	14:16~22:01	10:20~17:38	14:16~23:12	10:05~18:05
조서 열람 시간	17:50~18:12	17:56~18:11	18:01~18:13	22:02~22:25	17:40~17:52	23:13~23:35	18:07~18:23

다. 2018. 11. 13.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 피의자는 ○○ 소재 ○○빌딩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몇 층 건물인가요

답 :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입니다

문 : 언제 얼마에 매수하였나요

답 : 2016. 7. 7.경 35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중략)

문 : 당시 피의자의 재산이 많았나요

답 : 4,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문 : 빚은 있었나요

답 : 아닙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문 : 그럼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단돈 4,000만원으로 35억원이나 하는 빌딩을 매수하였다는 말이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라. 2018. 11. 28.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 피의자는 ○○빌딩 9층에 거주하였지요

답 : 2017. 2.부터 2018. 4.경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문 :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답 : 전처 ○○○, 아들 ○○○, 딸 ○○○와 함께 살았습니다

문 :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2012.경 이혼하여 따로 살았는데 애들 문제로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마.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각각 1996년, 2003년도의 것이며 고소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다.

바. 피해자는 수형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

조에 규정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사. 피해자는 2018. 11. 20.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더 이상 할 말이나 제출할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 란에 '없습니다',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 란에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8. 11. 28.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더 이상 할 말이나 제출할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 란에 '찾아보고 서류정리해서 변호사한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자. 조사 당시 피해자, 고소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1) 관련 기본권 및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

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 조사실에서의 피의자 조사 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6조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로서 해당 검사가 요청하거나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중에도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현재는 '보호장비'라는 용어를 사용)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2005. 5. 26. 2004헌마49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가 수용자의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한 사안에서, ‘뚜렷한 근거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수용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인정하여 포승과 수갑을 착용시킨 채 조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비록 계호 업무를 담당한 교도관이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는 검사실의 책임자로서 조사 시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정하였다(2018. 10. 4. 18진정0496300). 또한 2017. 12. 21.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사 시 수갑 등 장구 사용 관련 정책 권고」에서는 「인권보호 수사준칙」등을 개정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검사가 호송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장구의 해제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하였으며, 대검찰청은 2018. 4. 30. 권고수용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2)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여부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

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사실의 구조상 피해자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시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 전의 것으로서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조사 받던 혐의 역시 폭행·상해 등 유형력 행사에 관한 범죄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1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진정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없는 상황에서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하며 일부 언성이 높아졌던 정황이나 매 조사 시마다 2회 이상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바,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대응으로 조사를 받는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조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편파·강압 수사)

먼저 진정요지 나1), 2),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진정인 2가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재량에 해당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상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피의 사실에 대하여 항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음으로 진정요지 나4), 5), 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진정인 2가 강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술을 기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7건의 수사과정 확인서의 '이의제기' 란에 '없습니다' 또는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인격권 침해)

피해자는 피진정인 2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것으로서, 고소인은 피해자가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도중 이혼한 처와 자식들과 함께 고소인 명의의 빌딩에 생활하였고, 고소인이 준 돈 및 신용카드 역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고소내용 및 발언의 전후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2의 질문은 고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방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8.

위원장 최혜리

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웅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통화·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4.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

제366조 (검사 조사실 근무자 유의 사항)

①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수용자
-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수용자
- 3. 정신질환 수용자
- 4.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 5. 상습 규율위반 수용자
- 6. 그 밖에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로서 해당 검사가 요청하거나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